

통근 수당 참여 양식

뉴욕 시의 통근 수당법(Commuter Benefits Law)에 따라, 특정 고용주는 반드시 기존의 상근직 정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또는 정직원 근무 시작 후 4주차 중 나중 시점부터 통근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311번으로 문의하거나 nyc.gov/commuterbenefits에서 통근 수당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(FAQ)를 참조하십시오.

직원 참고사항:

고용주는 법으로 직원에게 통근 수당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직원의 참여는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.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나중에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.

고용주 정보	
고용주 이름	
주소	
시/주/우편번호	
전화번호	
직원 정보	
성명(이름/중간/성)	
주소	
시/주/우편번호	
전화번호	
이메일 주소	
채용 일자	

본인 _____ (근로자 성명(정자체))은(는) 본인의 고용주가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까지 자격이 되는 교통 수당에 대해 세전 소득을 사용하려는 제안을 수락합니다. 거부합니다.

직원 서명

날짜

뉴욕 시 통근 수당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비준수 사례를 신고하시려면, 소비자사안부(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, DCA)에 nyc.gov/commuterbenefits 나 이메일 commuterbenefits@dca.nyc.gov 또는 전화 311 (뉴욕 시 외부 지역은 212-NEW-YORK)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